

##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7. 7. 1 조례 제875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2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사업” 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용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될 기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용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용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 용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5. “용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용자를 위해 시장과 용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용자금의 용자업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2장 용자금 운영

제4조(용자대상) ① 용자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변지역 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될 기업으로서 용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용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용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용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용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용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용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용자할 수 있다.

제5조(용자한도 및 조건) 용자한도 및 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용자절차) ① 용자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자는 용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제출된 용자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용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용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용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용자대상자 및 해당 용자기관에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④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해당 용자기관에 용자금을 신청하고, 해당 용자기관의 용자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⑤ 용자대상자는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용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용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용자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용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용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용자할 수 있다.

제7조(용자신청 시기) 용자신청 시기는 상·하반기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용자금의 상환) ① 용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기간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용자기관의 일반 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9조(용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며, 2회까지 재연장 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용자금의 상환기한까지 시장에게 용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용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용자금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용자의 제한) 용자금을 대출받은 자는 용자금 상환이전에 다시 용자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용자배정자금의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용자대상자의 용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조건 미비 등으로 용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용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용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채권관리) 용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용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 파산 등 특수여건으로 용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용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용자금의 반환) 시장은 용자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 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진출할 경우
2. 자금을 용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경우

제14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자금의 용자를 받은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용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용자금 수혜자의 사업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실적 제출) 용자기관은 용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용자금 수혜자 명단 및 용자실적)을 월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용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용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	배점 (100)	배 점 내 역			비 고
		상	중	하	
지 역 내 장기거주	20	(10년 이상) 20	(9~5년) 15	(4년 이하) 10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으로 하며 재전입자는 거주기간 전체를 합산 한다
사업성공을 및 사업추진 의욕	20	20	15	10	· 소득증대사업은 “상·중·하”로 구분하여 배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으로, 생활안정자금용자는 “하”로 배점한다.
사업참여 인원	30	(5인 이상) 30	(3~4인) 20	(2인 이하) 10	· 20세 이상 실제 참여인원으로 하며 학생·직장인은 제외한다.
자기자본 투 자 율	30	(50% 이상) 30	(30% 이상) 20	(30% 미만) 10	· 신규투자비 총액 기준

[별표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용자 우선순위 배점표

내 용	배점 (100)	배 점 내 역			비 고
		상	중	하	
대상사업	20	(IT산업) 20	(중공업) 15	(기타) 10	
고용인원	30	(20인 이상)30	(10인 이상)25	(10인 미만) 20	· 상시 고용인원 기준
자기자본 투 자 율	30	(50% 이상) 30	(30% 이상) 20	(30% 미만) 10	· 신규투자비 총액 기준
사업성공율 및 사업추진의욕	20	20	15	10	

[별표 3]

융자한도 및 조건

구 분	융자한도액	대출이자	상 환 조 건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1인당 5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연 3%	5년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b>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신청서</b>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신청금액(천원)		용도	
사업수익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2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3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조건	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시는 즉시 융자금 반환		
<p>「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용인시장 귀하</p>			
첨부서류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b>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 용자신청서</b>			
신청인	성 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신청금액(천원)		용 도	
사 업 수 익 기 간	<input type="checkbox"/> 1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2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3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조        건	지원사업 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진출시는 즉시 용자금 반환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유치 지원사업자금 용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부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 주민복지지원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 사업개요 :

3. 사업장소 :

4.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비총계	용자 (지원사업기금)	자부담	비고
금액				

5. 사업계획(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기업유치지원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3. 사업장소 :				
4.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총계	용 자 (지원사업기금)	자 부 담	비 고
금 액				
5. 사업계획(구체적으로 기재)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b>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b>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자금액 (천원)	
<p>귀하를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용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용자 받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용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용인시장 (인)</p>			
※ 구비서류 : 금융기관 요청 서류 ※ 용자금 신청기한 까지 신청하지 않을 시 용자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제 호		
<b>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용자대상자 결정통지서</b>		
성명	주소	금액(천원)
<p>위 사람을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용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용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기관)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용인시장 (인)</p>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 )지원사업자금 융자사후관리카드							
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용 자 내 용	융자금액	금	원	용 자 일			
	융자기간	년	거치	년	상환	상환방법	
원리금 상환 및 운영실태 (여백부족시 이면 기재)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조사일자						
	상환실적						
	사업실태						
비 고							
※ 사업실태란에는 성공(①), 현상유지(②), 운영부실(③), 중도폐지(④)로 구분 기재하며, 중도폐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한다. ※ 상환실적란에는 미상환금액을 기재							

[별지 제8호서식]

### 기관명(용자기관명)

분류기호 :

수 신 : 용인시장

제 목 : / 분기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용자실적

#### 1. 실적 및 누계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전분기말 용자잔액	년 ( /4분기) 배정액 (B)	용 자 한도액 (A+B)	용자실적		지자체 반납액	미용자 잔 액
	이월사용액 (A)			건수	금액		
당분기							
누 계							

#### 2. 용자실적 내용

(금액단위 : 천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용자금액	용자조건	용자일자

금 용 기 관 장 (직인)